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4-38호  
2024. 6. 28.(금)

## 차 례

### 조 례(20)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51호) ..... 1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52호) ..... 4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753호) ..... 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54호) ..... 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55호) ..... 3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756호) ..... 40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57호) ..... 65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58호) ..... 6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59호) ..... 70
-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60호) ..... 7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조례 제1761호) ..... 83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62호) ..... 8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63호) ..... 90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64호) ..... 95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65호) ..... 9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조례 제1766호) ..... 9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조례 제1767호) ..... 1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68호) ..... 110

## 차 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조례(조례 제1769호) ..... 114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조례 제1770호) ..... 119

### 규 칙(4)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54호) ..... 122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55호) ..... 13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85호) ..... 13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86호) ..... 141

###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 폐지규정(훈령 제505호) ..... 143

### 고 시(2)

-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279호선, 소로1-와동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고시 제2024-77호) ..... 145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고시 제2024-78호) ..... 149

### 공 고(2)

-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공고 제2024-680호) ..... 150
- 공시송달공고(고시 제2024-686호) ..... 152

공 램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 6월 2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51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포상취소) ①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포상 취소의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사항 등에 대한 포상취소 사항을 신설함(제14조의2).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5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제4호 중 “20일”을 “25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 전단 중 “5일”을 “10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9항) 본문 중 “전일”을 “전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④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

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성장지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특별휴가의 재직 대상 및 휴가 일수 등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고,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12조제4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성장지원휴가를 부여(제12조제5항)
-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용(제12조제6항)
- 의장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제12조제10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제12조제11항)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53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회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 등) ① 하나의 연구회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할 수 없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구회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하나의 연구회 회장은 다른 연구회의 회장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원이 연구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회의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의 소속 의원은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보여 주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회의 회장은 해당 연구회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회의 존속기한은 계획된 연구활동의 종료 또는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⑦ 의원은 2개의 연구회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제4조(연구활동 범위)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5조(심의) ①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회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회의 소속의원 변경
3.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4.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7조(예산지원) ① 의장은 연구회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 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회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의 개최 시 필요경비
- ③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의장은 연구회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6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활동비 신청 등) ①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드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회의 회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실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가 연구활동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연구회의 회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획서 또는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당연직 위원은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제1항 따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신청) ① 정책연구용역을 받주하려는 연구회의 회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성·중복성·기대효과 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회에 통지하여

야 한다.

제16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평가) ① 연구회의 회장은 해당 연구활동 기간 중 필요시 의장에게 연구활동 진행에 대한 중간보고를 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의 회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용역보고서, 예산 사용 내역서 그 밖에 심의 의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의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최종성과물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별지 제9호서식으로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우수성: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결과의 부합성, 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2. 성실성: 정책연구용역 수행 및 기한 준수 등

제17조(연구활동결과 공개 및 관리)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대덕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연구회 등록부) 전문위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회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서**

1. 연구회명 :
2. 회장 :
3. 연구목적 :
4. 구성원 인적사항

연번	의원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고
1				
2				
3				
4				
5				
6				
⋮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의원연구회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회 회장: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 의원연구회 소속의원 변경 신청서

연구회명		
회장		
의원	당 초	의원
변동내용	변 경	의원
변동일자		
변동사유		
기 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본 의원연구회의 소속의원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회 회장: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 의원연구회 심의결과 보고서

(연구회 등록·연구활동 계획·연구활동비 지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

연구회 등록	연구회명				
	회장				
	적격여부	적격		부적격	
부적격사유					
연구활동 계획	연구회명				
	과제명				
	승인여부	승인		불승인	
불승인사유					
연구활동비 지원	총액	신청액	금 원(금 원)	지원액	금 원(금 원)
	내역	신청내역		지원내역	※ 세부내역 붙임
	증감사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회명				
	과제명				
	승인여부	승인		불승인	
불승인사유					
기 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원연구회 심의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의원연구회 심의결과 통지서

(연구회 등록·연구활동 계획·연구활동비 지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

연 구 회 명					
회 장					
연 구 주 제					
연 구 회 등 록	적격여부	적격		부적격	
	부적격사유				
연 구 활 동 계 획	승인여부	승인		불승인	
	불승인사유				
연 구 활 동 비 지 원	총액	신청액	금 원(금 원)	지원액	금 원(금 원)
	내역	신청내역		지원내역	※ 세부내역 불임
	증감사유				
연 구 활 동 결과보고서	승인여부	승인		불승인	
	불승인사유				
기 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000연구회 회장 000 귀하

[별지 제5호서식]

## 연구활동 계획서

연 구 회 명		
회 장		
연 구 과 제		
주 요 내 용 요약		
연 구 방 법 및 계 획 ※ 세부내역 불임1		
예 상 연 구 활 동 비	총액	금 원 (금 원)
	내역	- 자료수집비, 여비, 식비, 회의비, 강사로, 전문가 자문 경비 등 ※ 세부내역 불임2
기 타 사 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회 회장: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

연구회명			
연구과제 변경내용	당초	연구과제	
		연구목적	
	변경	연구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주요내용 약			
연구방법 및 계획	※ 세부내역 붙임1		
예산 연구활동비	총액	금 원 (금 원)	
	내역	- 자료수집비, 여비, 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 경비 등 ※ 세부내역 붙임2	
기타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회 회장: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연구회명	※ 발주할 의원연구회 기재	
연구과제명		
소요예산	금 원 (금 원)	
소요기간	개월	
연구필요성	○	
주요과업	○ ※ 분량은 제한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활용계획	○ ※ 분량은 제한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의원	성명 :	(서명/인) 성명 : (서명/인)
	성명 :	(서명/인) 성명 : (서명/인)
	성명 :	(서명/인) 성명 : (서명/인)
	성명 :	(서명/인) 성명 : (서명/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회 회장: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 정책연구용역 계획서(예시)

###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나. 용역기간 :

다. 소요예산 :

###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나.

### 3. 대상 및 세부내용 ※ 분량은 제한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가.

나.

### 4. 최근 3년간 유사연구 사례

### 5.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회 회장: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 보고서

연구회명	
회장	
심의내용	○ ○ ○
심의결과	○ ○ ○
기타사항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5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 통지서

연구회명	
회장	
심의내용	○ ○ ○
심의결과	○ ○ ○
기타사항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000연구회 회장 000 귀하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회명	
회장	
연구과제명	
연구방법	
연구내용 및 결과	
활동내용 요약	
기타사항	

붙임 : 1. 연구활동 결과내역 또는 용역보고서 1부.  
2. 예산사용내역서 1부.  
3. 기타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연구회 회장: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덕구의회 의원연구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연구 활동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함(제9조).
-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정함(제11조).
-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심의시 고려 사항에 대해 정함(제15조).
-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의 제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
- 연구활동 공개와 결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5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등록 사무위임조례」를 폐지한다.

**보건소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비고
1	<b>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b>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다. 특별휴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및 제7조의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총무과
2	<b>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부속의료 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b> 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폐업·재개업) 나. 행정처분(시정명령, 취소, 과징금처분 등)	「의료법」 제33조, 제35조, 제40조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67조	보건소장	
3	<b>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b>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폐업·재개업) 나. 행정처분(허가취소, 업무의 정지 등)	「약사법」 제20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제76조, 제81조	보건소장	
4	<b>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b> 가. 의료기 판매업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폐업·재개업) 나. 행정처분(허가 등의 취소, 업무의정지, 과징금 등)	「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56조	보건소장	
5	<b>안마시술소·안마원 및 접골·침구 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b> 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휴업·폐업·재개업) 나. 행정처분(시정명령·업무정지 등)	「의료법」 제33조, 제40 조, 제81조, 제82조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67조	보건소장	
6	<b>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b> 가. 개설등록 신고 및 변경 등록 (양도양수·휴업·폐업·재개업) 나.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취소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	보건소장	
7	<b>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b> 가. 인정신고 및 변경신고 (양도양수·휴업·폐업·재개업) 나.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취소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 제11조의2,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제23조, 제24조	보건소장	
8	<b>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권한</b> 가. 설치·양도·폐기 및 중지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보건소장	

	라. 행정처분(사용금지 명령 등)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조, 제16조		
9	<b>의료기관의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 부가능 사전 승인</b>	「의료법」 제27조제3항	보건소장	
10	<b>의료기관세탁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b> 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폐업·재개업) 나. 지도 감독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같은 규칙 제11조	보건소장	
11	<b>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b> 가. 신고 및 변경 신고 (휴업·폐업·재개업) 나. 행정처분(영업의 정지·폐쇄명령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3조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보건소장	
12	<b>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b> 가. 금연구역 지정 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같은 법 제34조	보건소장	
13	<b>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b>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행정처분(등록취소, 과태료, 청문 등)	「약사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76조, 제76조의 3, 제77조, 제98조	보건소장	
14	<b>감시원증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b> 가. 약사감시원 임명 나. 의료기기감시원 임명 다. 의료지도원 임명	「약사법」 제78조 「의료기기법」 제40조 「의료법」 제69조	보건소장	
15	<b>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b>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 나. 구급차등 운용신고 다.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과징금, 청문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보건소장	
16	<b>감염병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b> 가. 역학조사반 구성 나. 감염병관리기관지정 다.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라. 예방상 필요한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9조	보건소장	
17	<b>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b> 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보건소장	
18	<b>산후조리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b>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 나. 산후조리업 승계	「모자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보건소장	

	다. 산후조리업 폐업·휴업 및 재개의신고 라. 시정명령 마.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등), 과징금, 청문, 과태료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제15조의13 같은 법 제27조		
19	<b>정신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b> 가. 정신의료기관 시정명령 및 사업정지, 개설허가취소, 폐쇄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라. 과징금 부과처분 마.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바.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사.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명령 아. 청문 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차.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설치·운영 타.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파.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하.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너. 임시 퇴원등 더. 외래치료 지원 등 러. 보고·검사 등 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89조	보건소장	
20	<b>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b> 가. 의약품 판매업 허가 나. 한약업사의 허가 신청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업무개시 명령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아. 청문 자. 과징금 처분 차. 과태료	「약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약사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보건소장	

[별표 3]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임 사무 명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	수임 기관	비고
총무과	1	<b>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b>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동장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 및 공가 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및 제7조의6		
자 치 행정과	2	<b>다. 특별휴가</b>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동장	
		<b>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b>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가.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 제27조		
문화관광 체육과	3	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0조	동장	
		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40조		
에너지 산업과	4	<b>송촌 문화의 집 운영·관리</b>	「지방자치법」 제117조	송촌동장	
		<b>신탄진 문화의 집 운영·관리</b>		신탄진동장	
에너지 산업과	5	<b>농지에 관한 다음의 사항</b>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0조	동장	
		가. 농지대장 작성·비치			
		나.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생 활 지원과	6	다. 자경증명의 발급	같은 법 제50조	동장	
		<b>통합사례관리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b>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가. 대상자 접수			
		나. 욕구 조사			
		다. 사례회의 개최			
		라. 대상자 구분·선정			
		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바. 서비스 제공·점검·종결					
사. 사후관리					
토 지 정책과	7	<b>통합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b>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동장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처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에 따른 위임사무로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수입기관(사업소)의 명칭을 현행화함(별표 2).
  - 복합문화센터장 → 평생학습원장
-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명칭과 근거법령을 현행화함(별표 2).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를 추가함(별표 3).
- 「농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의 용어를 현행화함(별표 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등록 사무위임조례」를 폐지함.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5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

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직무상 비위 사실이 있는 자 등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함(제5조의2).
- 직무상 비위 사실이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함(제5조의3).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5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재난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이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신고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 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 다. 시민단체 대표 또는 사회단체 대표
    - 라.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 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 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법령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이의신청 등)** ①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하 “보

조금 조례”라 한다) 제16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로 한다.

제6조 중 “보조금 조례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법 제8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8조 중 “보조금 조례 제28조”를 “법 제11조, 제12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9조 중 “보조금 조례”를 “법 제17조”로 한다.

제10조 중 “보조금 조례”를 “법 및 보조금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

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

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㉛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㉛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

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③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 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유의 사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상사건	사건명			
	피심인 (피조사인)			
	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	결정일자	년 월 일		
	결정내용	주문	대상자 (대상자	에게 포상금 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함)
		이유		

우리 구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직인

###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 포 상 금 결 정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결정사항	결정일자	년   월   일
	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구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운용 관련 조례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규정을 신설함(제3조).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4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상위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함.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  
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57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설치하여”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  
융상품으로”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  
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  
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체계 및 관리의무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도록 명시함(제6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8조).
- 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 및 심의위원회 활동내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5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불부합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인용조문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정비함(제19조).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5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별표1의2”를 “별표 1의2”로 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줄수있”을 “줄 수 있”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연구기관등”을 “연구기관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품위를 유지”를 “품위를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휴 가”를 “휴가”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

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제4호 중 “20일”을 “25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9항)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1항) 전단 중 “5일”을 “10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중전의 제12항) 본문 중 “전일”을 “전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⑦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구청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성장지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특별휴가의 재직 대상 및 휴가 일수 등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고,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23조제7항).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성장지원휴가를 부여(제23조제8항)
-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용(제23조제9항)
- 구청장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제23조제13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정비(제1장, 제2조제3항, 제3조의2제2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3장, 제23조제11항 및 제14항)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60호

###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중 신탄진동(新灘津洞)과 평촌동(坪村洞)의 관할구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명칭	관할구역
신탄진동 (新灘津洞)	신탄진동 일원 [중전의 평촌동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번지 편입]

평촌동 (坪村洞)	평촌동 일원 [평촌동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번지 제외]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중 신탄진동과 덕암동의 관할구역(법정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명칭	동장정수	관할구역(법정동)
신탄진동	1	신탄진동 1, 2, 3, 4의1-4의6, 5, 6의1-6의2, 7, 8, 9의1-9의4, 10의1-10의3, 11, 12의1-12의4, 13, 14, 15의1-15의2, 16의1-16의8, 17의1-17의16, 18의1-18의15, 19의1-19의13, 20의1-20의14,21, 22의1-22의2, 23, 24, 24의1-24의2, 24의4-24의8, 25, 26, 27, 28, 31, 32, 33, 33의1-33의2, 34, 34의1, 35의1-35의3, 36, 37, 38의1-38의3, 39의2-39의6, 40의1-40의3, 40의6, 40의8-40의15, 40의17, 40의22-40의24, 40의26-40의27, 41, 42의1-42의2, 43의2-43의3, 44의1-44의3, 45의1-45의3, 46의1,

	<p>46의3, 48의1, 48의3, 49의2, 50, 52의1-52의2, 53의1-53의2, 53의4, 54의1-54의2, 54의4, 55, 56의1-56의5, 56의8, 56의9, 57, 58의1, 59, 63의2, 64의1-64의2, 64의4, 66의2, 68의2, 69의2, 71의2, 72의2, 731, 74의1, 75의1, 76의2-76의3, 79의1, 79의7, 79의9, 80의1-80의2, 80의5-80의6, 81의1, 81의4, 82의2-82의5, 83의1, 83의4, 837, 83의10, 83의14-83의24, 84의3, 84의7-84의8, 85의1-85의2, 89의1-89의2, 89의4, 89의19, 91의1, 91의4-91의5, 91의21-91의30, 100의1, 106의9, 106의17-106의18, 113의1-113의10, 113의12, 113의16-113의21, 113의23-113의28, 113의30-113의33, 113의36-113의47, 113의49-113의52, 114의1-114의9, 114의11-114의21, 114의24-114의38, 116의1-116의15, 116의17, 117의1-117의19, 117의21   118의28, 118의32-118의34, 118의37, 119의1-119의4, 119의6-119의15, 120의1-120의6, 120의8-120의12, 120의15-120의21, 120의23-120의26, 120의28-120의37, 121의1, 121의3-121의7, 121의10-121의21, 121의23-121의41, 122의1-122의8, 122의10-122의27, 122의29-122의33, 122의35-122의37, 123의1-123의12, 123의14-123의21, 123</p>
--	--

	<p>의23-123의34, 123의36, 123의38-123의58, 123의63, 124의1-124의12, 124의14, 124의16-124의21, 124의23-124의33, 125의1-125의12, 125의16-125의19, 125의22, 126의1-126의7, 126의9-126의13, 126의15, 126의17, 126의19-126의39, 126의41, 127의1-127의23, 127의25-127의29, 127의31-127의38, 128의1-128의14, 128의16-128의25, 129의1-129의15, 130의1-130의3, 130의5-130의13, 130의15-130의32, 131의1-131의23, 131의26-131의37, 132의1-132의10, 132의13-132의14, 132의16-132의30, 133의1-133의9, 133의12-133의19, 133의21-133의29, 134의1-134의4, 134의6-134의13, 134의15-134의17, 134의19-134의27, 135의1-135의22, 136의1-136의38, 137의1-137의15, 137의17-137의25, 138의1-138의11, 138의13-138의14, 138   137-138의27, 138의29, 139의1-139의15, 139의17-139의18, 139   139의20-139의23, 140의1, 140의23, 140의25-125의29, 141의1, 141의3-141의9, 141의11-141의24, 142의1, 142의3-142의14, 142의16-142의20, 142의22, 142의24, 142의26-142의28, 143의1-143의4, 143의6-143의20, 143의23-143의25, 143의27, 143의29-14</p>
--	--

	<p>3의35, 144의1-144의4, 144의6-144의18, 144의21-144의33, 144의35, 145의1-145의7, 145의9-145의13, 146, 146의1, 147의1-147의7, 149의5-149의7, 150의2-150의8, 152의1-152의23, 152의25, 152의27-152의38, 153의1-153의22, 153의27, 153의29-153의35, 153의37-153의38, 154의1, 154의4-154의7, 154의9-154의26, 154의29-154의31, 154의33-154의43, 155의1-155의6, 155의9-155의31, 155의33-155의45, 156의1-156의2, 156의4-156의18, 156의20-156의23, 156의27-156의38, 157의2-157의18, 159의1-159의6, 159의8-159의10, 159의12-159의15, 159의17-159의30, 160의1-160의12, 160의15-160의26, 161의1-161의23, 162의1-162의7, 162의10-162의18, 162의20-162의25, 163의1-163의2, 164의1-164의3, 165의1-165의5, 165의7-165의25, 166의1-166의12, 166의14, 166의18-166의21, 166의25-166의28, 167의1-167의24, 167의26-167의39, 168의1-168의8, 168의11-168의39, 169의1-169의44, 170의1, 170의3-170의4, 170의6-170의14, 170의17, 170의20-170의38, 170의40-170의43, 171의1-171의4, 171의6-171의47, 171의52, 172의1-172의7, 172의9-</p>
--	--

	<p>172의30, 172의33-172의37, 173의41-172의42, 172의44-173의45, 173의1-173의21, 173의24-173의34, 174의1-174의21, 174의24, 175의1-175의2, 175의5-175의35, 176의1-176의17, 190의15, 192의3, 195의3, 196, 208의1, 209의1-209의2, 209의4-209의6, 210의1-210의2, 210의4, 211의1, 211의3, 212의1, 212의3-212의5, 213, 213의1-213의3, 213의5-213의8, 213의10-213의11, 213의13-213의17, 215, 215의2, 216, 216의3, 217의1, 220, 221, 221의1, 222,223의1, 223의3, 224의1-224의4, 225, 225의1-225의3, 226의1-226의3, 226의5, 227, 227의1-227의2, 228, 228의1-228의7, 229, 229의1-229의2, 230, 230의1-230의3, 230의6, 230의10, 231의1-231의3, 232의1, 233의1-233의3, 234의1-234의2, 235의1, 235의3, 236, 237의1-237의6, 238, 238의1-238의5, 239의1-239의3, 240의1-240의7, 241, 242, 243, 244, 245의1, 246의4, 246의6-246의8, 247의1, 248의1, 248의5-248의11, 249, 249의1-249의2, 250, 251의1-251의6, 252의1-252의2, 253, 253의1, 254, 255, 256의1-256의3, 257의1-257의4, 258의1-258의4, 259의1-259의10, 259의12-259의13, 260의1-260의3, 261, 261의</p>
--	---

	<p>2-261의9, 263, 264, 274의1-264의3, 264의7, 264의10, 264의14, 264의16-264의17, 264의21-264의24, 264의26-264의27, 264의30-264의35, 264의37-264의42, 264의44-264의81, 264의83, 265의3, 265의5-265의6, 266의1-266의5, 266의7-266의9, 267의1-267의3, 268의1-268의10, 269의1-269의4, 270의1, 270의5-270의9, 271의2, 272, 272의1-272의2, 273의1, 274의1-274의2, 275의1, 277, 278의1-278의2, 279, 279의1, 280의1-280의3, 281, 281의1, 282의1-282의6, 283의1-283의6, 284, 285, 285의2-285의13, 285의16-285의20, 285의23-285의26, 286의15-286의19, 286의21-286의23, 286의26, 287의1-287의7, 287의9-287의13, 287의15, 287의18-287의23, 288의1-288의4, 289의1-289의2, 289의4-289의7, 289의9-289의10, 290의1-290의4, 291, 292의2, 292의4, 292의6, 293의1-293의3, 293의6-293의7, 294의2-294의6, 294의8-294의12, 294의15-294의16, 295, 295의1-295의3, 295의12-295의16, 295의18, 295의20-295의42, 295의44-295의107, 295의109-295의157, 295의159-295의160, 295의162-295의195, 295의197-295의204, 295의206의295의216, 295의218-2</p>
--	---

	<p>95의222, 299의4-299의5, 299의7-299의9, 300의3-300의4, 388의174, 388의177-388의179, 398의1, 398의3, 398의19, 398의30-398의31, 398의60, 398의84, 398의87, 398의90-398의101, 442, 442의2, 442의74, 442의79, 444의2, 445의1, 447의6, 450의1, 451, 451의1-451의8, 451의10, 454의3-454의6, 455의1, 455의2, 456의1-456의2, 457의1-457의2, 457의5-457의7, 458의1-458의2, 458의4-458의8, 459의2-459의4, 460의2-460의3, 461의2-461의4, 463의1, 464의1-464의2, 464의4-464의6, 464의9-464의20, 465의3, 466의1, 466의5, 467, 469의5, 469의7, 469의9, 469의12, 469의18, 469의23-469의25, 469의28, 469의32, 470의1, 684, 685, 685의2, 686, 686의6-686의9, 687의3-687의4, 688의1-688의2, 689, 689의1, 690, 690의1-690의2, 691, 692의1, 693, 703의1, 703의3-703의4, 704의1, 704의3, 705의2-705의5, 706, 707, 708, 708의1-708의3, 708의5-708의23, 708의26-708의27, 708의31-708의40, 709, 710, 711의2-711의4, 711의42, 711의48, 712의1-712의2, 712의7, 719, 720의2-720의3, 720의11, 724, 725의1-725의5, 725의7, 725의10, 725의12, 725의14-725의15, 729</p>
--	---

		<p>의7-729의8, 729의11-729의12, 729의14-729의15, 729의23, 730의1, 730의3-730의5, 733-746, 753-754, 754의1, 755-757, 760-762, 762의1-762의2, 763-765, 산1의1-산1의9, 산1의11-산1의23, 산1의25, 산1의28-산1의33, 산2의3, 산2의22-산2의25, 산2의31, 산2의35-산2의40, 산2의45, 산2의51, 산2의5-산2의56, 산2의58, 산3의1, 산3의3-산3의5, 산4의1, 산4의3, 산4의6-산4의7, 산23의1, 산23의3, 산23의5-산23의7, 산24의2-산24의3, 산26의2, 산27의2-산27의3, 산28의1-산28의4, 산29의1-산29의3, 산30의1-산30의3, 산31의1-산31의3, 산32의1-산32의2, 산33의1, 산33의7, 산34의5, 산36의1, 산36의8, 산36의13, 산38의1-산38의5, 산39의1, 산39의7, 산40의1, 산41의1, 산41의16-산41의17번지 일원, 삼정동, 용호동, 이현동, 갈전동, 부수동, 황호동, 미호동 일원</p> <p><b>[종전의 평촌동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번지 편입]</b></p>
덕암동	1	<p>덕암동, 상서동, 평촌동 일원</p> <p><b>[평촌동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번지 제외]</b></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신탄진동, 평촌동 2개의 법정동이 위치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평촌동 549번지 외 10필지를 신탄진동으로 변경함(별표).
-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제명을 정비함.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부칙에서 일괄 개정함.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61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안전 환경 지원)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 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제2조).
-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 지원 신청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 업무의 위탁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제6조).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62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특보 등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제2조제5호(중전의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목(중전의 마목) 중 “야외근로자 등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제10조 중 “폭염경감시설”을 “폭염저감시설”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폭염특보 발령 기준 관련 「기상법」 개정사항 및 인용조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폭염, 폭염특보 및 폭염취약계층 정의에 대해 정비함(제2조).
-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제10조).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  
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4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6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별지 제9호서식]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양 [ ], 장해 [ ], 장제 [ ], 유족 [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의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b>청구금액</b>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날인)

**대덕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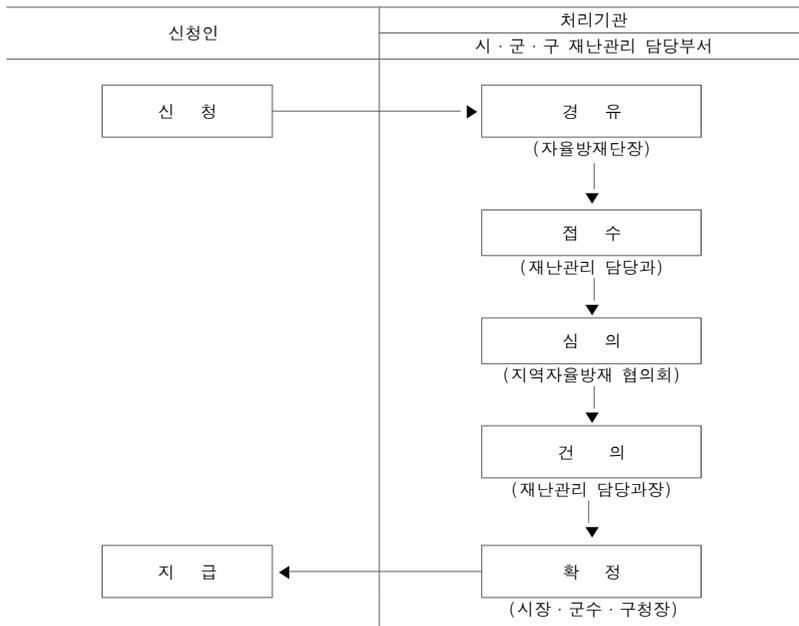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처리절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임원의 연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 요청에 따라 장제·유족 보상 시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확인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단장, 부단장, 간사에 대한 연임 규정을 신설함(제5조제5항).
- 재해 보상청구서 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장제·유족보상의 인감증명서를 삭제함(별지 제9호서식).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64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송달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4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1매당 세액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정비함(제4조제1항).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65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조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과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함 (제5조의2 신설).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정비함(제7조).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66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도 점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시설·법인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제3조).
-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5조).
- 사업의 위임 및 위탁과 그에 따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제6조~제7조).
-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8조~9조).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67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등산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등산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 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 동장의 의견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면적은 1대당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설치된 시설의 유지·보수 위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안내표지)**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종전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도 점검 시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 등을 철거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

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외운동기구 안내표지

(제7조제1항 관련)

<b>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b>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b>※ 주의사항 ※</b>	
<p>○ 이용시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표시된 준수사항 및 사용법을 숙지한 후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p> <p>○ 운동기구 고장 시 즉시 사용을 멈추고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p>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제9조 관련)

시 설 명		관리번호	
위 치			
설치면적	㎡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사유지)		
설치일자	년 월 일		
사업비	천원 (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기타 천원)		
설치현황	전경사진		
관리현황	점검일시	점검현황	수리·보수내역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야외운동기구의 안내표지, 유지관리,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영조물배상공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및 제11조).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68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조 제1호”를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이”를 “한쪽 성이 60%를 넘어가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제팀장”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을 “우수기업인”으로, “있다”를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수여받은 상장,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갈음한다”로 한다.

①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정부 또는 기업 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2. 그 밖에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양성평등 기여,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구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기업지원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직무상 비위 사실이 있는 자 등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우수기업인에 대한 선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우수 기업인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7조).
-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함(제7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제7조의3).
- 우수기업인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정함(제11조).
- 그 밖에 담당조직 명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제2조, 제7조 및 제13조).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69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 및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

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반려동물 입양”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한 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동물복지 계획을 참고하여, 구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 정책 및 지방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

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과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등록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비용
2. 동물등록비용
3. 동물보험료 또는 동물의료비

②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 보호,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반려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제3조).
- 구민의 참여와 협력 및 소유자 등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제5조).
- 반려동물의 구조·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70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해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고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

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최근 맨발걷기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공원 등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덕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홍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5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데 이 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 업 기 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 업 기 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산 업 기 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 업 기 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톨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 업 기 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 업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 업 기 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 업 기 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 업 기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측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 업 기 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 업 기 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 업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 업 기 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 업 기 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 업 기 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 업 기 사 : 종자, 식품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 업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 업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 업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해양수산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 업 기 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 업 기 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 업 기 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 업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 업 기 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 업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 업 기 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 업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p>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p>
	대 기	<p>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p>
	폐 기 물	<p>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p>
항 공	일반항공	<p>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p> <p>기 사 : 항공</p> <p>산업기사 : 항공</p>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p> <p>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일반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수도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건 축	<p>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꾸집, 급속채청호, 건축도장, 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p>지 적</p> <p>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측 지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p>교통시설</p>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도시교통설 계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p>디자인</p> <p>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p>
	방재안전	방재안전
방송통신	통신사	<p>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p>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통신기술	<p>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p>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송기술	<p>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p>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자통신기술	<p>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p>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조 리	조 리	<p>기 능 장 : 조리</p> <p>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북어)</p> <p>기 능 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북어)</p>
위 생	사 역	<p>기 능 사 : 환경기능사</p>
시설관리	시설관리	<p>기 능 장 : 전기</p> <p>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기 능 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p>

2.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감정평가사(7)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2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2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2급 직업상담사3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데이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자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업	축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물품질관리사(7) 수의사(7)	수산물품질관리사(3) 수의사(3)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건	보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의3.(생략)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 17.(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에 따라 “문화재” 등의 용어가 표기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정비함(안 별표 6).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홍태

2024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55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4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고, 기피여부는 의결로 결정하되 기피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⑦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⑧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2조 중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예산안”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윤리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60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 사항을 규정함(안 제60조의2제4항).
- 나. 위원의 회피 및 기피 처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0조의2제6항).
- 다. 위원의 제척 및 새로운 위원 위촉 사항을 규정함(안 제60조의2제7항 및 제8항).
- 라. 예산안 수정동의를 규정함(안 제62조).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85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만19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22. 12. 17. 공포, '23. 6. 28. 시행)에 따라 만 나이 표시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소년’ 용어의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함(제2조).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8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단서 중 “개선율”을 “개선, 제7조제1항제7호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환으로”를 “상환(5천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본문 중 “3월”을 “3개월(5천만원 이상의 용자금은 5개월)”로 한다.

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한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1천만원 이내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감염병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식품위생업소의 용자지원 대상에 대하여 제한조건을 완화하고, 상당 금액을 지원받은 업소에 대하여 거치기간 등을 확대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재해 발생 시 단란주점 등에 대한 용자제한 완화 규정을 신설함(제3조제2항제4호 및 제7조제1항제7호).
- 식품진흥기금 용자금 활용 시 용자금 거치, 상환기간 및 시설개선 기간 등을 확대함(제7조제3항 및 제4항).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 폐지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4년 6월 2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505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 폐지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 폐지이유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대덕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본 규정은 폐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을  
폐지함.

끝.

##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279호선, 소로1-와동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대덕구 고시 제2021-70호(2021.6.25.)로 인가된 대전 대덕구 와동 3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중로3-279호선, 소로1-와동2호선)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사업시행자인 대전광역시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279호선, 소로1-와동2호선) 실시계획(변경) 인가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와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 3층(와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279호선, 소로1-와동2호선)
  -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도로(중로3-279호선, 소로1-와동2호선) 개설사업
3. 사업예정지 / 변경없음
  - 중로3-279호선 :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48-4번지 ~ 와동 41번지 일원
  - 소로1-와동2호선 :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83-13번지 ~ 와동 26번지

4. 사업의 규모 / 변경없음
  - 중로3-279호선 : 도로개설 L=141m, B=12.0~15.0m
  - 소로1-와동2호선 : 도로개설 L=472m, B=10.0~12.0m
5. 변경 내용
  - 국유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소유권 이전 및 와동 48-4번지 필지 분할에 따른 지적면적 변경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참조
6. 변경 사유
  - 사업구역 내 소유권 이전 및 필지분할에 따른 지적면적 변경사항 고시
7.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시행 승인일로부터 60개월 / 변경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변경
  - “편입토지조서 세목조서 붙임”
9. 관계도서 / 변경없음
  -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 토지조서(중3-279호선)(변경)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대역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1	기정	와동	397-3	구	190	-	190	-	국 (기획재정부)					
	변경				-	190	-	190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3층(와 동)				
2	기정	와동	397-5	구	7	-	7	-	국 (기획재정부)					
	변경				-	7	-	7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3층(와 동)				
3	기정	와동	48-4	전	379	-	265	-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3층(와 동)				
	변경				-	265	-	265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3층(와 동)				
4	기정	와동	49-2	전	172	172	172	172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3층(와 동)				
5	기정	와동	50-2	전	110	110	110	110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 3층(와동)				
6	기정	와동	51	전	30	30	30	30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3층(와 동)				
7	기정	와동	52	전	48	48	48	48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3층(와 동)				
8	기정	와동	55-7	학	47	47	47	47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3층(와 동)				
9	기정	와동	53-1	전	30	30	30	30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3층(와 동)				
10	기정	와동	53-2	전	60	60	60	60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3층(와 동)				
11	기정	와동	54-2	전	118	118	118	118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3층(와 동)				
12	기정	와동	42-5	대	3	3	3	3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3층(와 동)				
13	기정	와동	42-6	전	97	97	97	97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3층(와 동)				
14	기정	와동	41-2	답	6	6	6	6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3층(와 동)				
계					14필지	14필지	1,183	1,183						

### ○ 토지조서(소로1-와동2호선)(변경)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대역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1	기정	와동	383-14	대	26	26	26	26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 3층(와동)				
2	기정	신대동	216-16	도	4	-	4	-	국(국토교통부)	-				
	변경				-	4	-	4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 3층(와동)				
3	기정	신대동	216-17	대	5	5	5	5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 3층(와동)				
4	기정	와동	383-4	도	1,804	-	1,804	-	국(국토교통부)	-				
	변경				-	1,804	-	1,804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 3층(와동)				
5	기정	와동	383-15	대	892	892	892	892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 3층(와동)				
6	기정	와동	503-1	잡	6	6	6	6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 3층(와동)				
7	기정	와동	503-2	잡	54	54	54	54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 3층(와동)				
8	기정	와동	504-1	도	125	-	125	-	국(기획재정부)	-				
	변경				-	125	-	125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 3층(와동)				
9	기정	와동	12-9	도	1,521	-	1,521	-	국(국토교통부)	-				
	변경				-	1,521	-	1,521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 3층(와동)				
10	기정	와동	26-2	대	156	-	156	-	와동2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1. 3층(와동)				
계					10필지	10필지	4,593	4,593		-				

※ 상기 토지상 지장물건 일체 포함

- 편입면적은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 후 조정될 수 있으며, 편입토지 내 지장물 포함임.(지장물건은 조정될 수 있음). 끝.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비래동 146-13	우암로 431	건물신축	역사적 인물(송시열)반영	2024. 6. 28.
신탄진동 251-1	남경마을로33 번길 35	건물신축	남경마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3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평촌동 296-26, 292-4, 292-6, 296-27, 296-28	평촌2길 98	건물신축	행정구역명(평촌동)을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되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명: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2.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3. 열람기간 및 의견서 제출기간: 2024. 6. 28. ~ 2024. 7. 12.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042-608-59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등의 표시
6. 기타: 열람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 토지(물건)조서

연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지분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상서동	산17-11	임	토지	432	㎡	1/3	송인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326-82				

※ 위 토지상 지장물건 포함.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686호

### 공시송달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년 6월 28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압류예고, 압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고
-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24. 6. 28. ~ 2024. 7. 11. (14일간)
- 기타
  - 가.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는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 장애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이 압류(대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노인장애인과(☎042-608-6805, 680

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